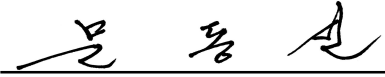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09년 10월 15일

군산시규칙 제 438호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시장”을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를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예산참여시민위원회 가입신청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거소					
E-mail					
전화번호	자택		직장		
	휴대전화				
직업					
경력					
참여희망 분과위원회	행정복지분과위원회 ()				
	경제건설분과위원회 ()				
※ 희망 분과위원회에 (○)하시고, 추후 분과위 구성시 참고용으로 활용됩니다.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예산참여 시민위원회 위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위원 추천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거소	우편번호 (-)				
E-mail					
직업					
경력					
전화번호	자택			직장	
	휴대전화				
추천자 (단체)	비영리민간단체는 단체명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명				
참여희망 분과위원회	행정복지분과위원회 ()				
	경제건설분과위원회 ()				
	※ 희망 분과위원회에 (○)하시고, 추후 분과위 구성시 참고용으로 활용됩니다.				

상기자의 동의를 얻어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주민자치위원장(○○단체장)

직인

군산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위 축 장

주 소 :

성 명 :

귀하를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참여시민위원회(연구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예산참여시민위원회 회의록

일 시				장 소	
참석상황	재적위원	참 석	불 참	(불참위원)	
안 건					
심의내용					
의결사항					
기타사항					
서 명	(분과)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표)

분과위원회별 담당부서 (제8조 관련)

구 분	담당 부서	간 사
행정복지분과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읍·면·동	국·소 주무담당
경제건설분과	항만경제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u>군산시 시민참여 예산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u>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군산시 시민참여 예산 운영조례</u>」 ----- ----- -.
제2조(운영계획) ① <u>시장</u>은 매년초에 시민 참여예산의 운영에 필요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2조(운영계획) ① <u>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 ----- --.
제3조(공고) <u>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u>에 의한 위원회 위원을 모집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고 하여야 한다. 1. ~ 2. (생략)	제3조(공고) 「<u>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u>」 (이하 “조례”라 한다) ---- ----- 1. ~ 2. (현행과 같음)
제5조(선정기준) ① 위원회의 위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u>기타 참여하려는 분과위원회와 관련 여부 등</u> ②(생략)	제5조(선정기준) ①----- ----- 1. ~ 2. (현행과 같음) 3. <u>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②(현행과 같음)

군산시 고시 제2009-80호

고 시

-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지정 및 같은법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주택과)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 10. 5

군 산 시 장

1. 인 가 사 유 : 연구시설 신축공사
2. 사업시행지 : 군산시 성산면 도암리 528-9번지외 7필지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
 - 나. 명 칭 : 연구시설 신축공사
4. 사업의 개요
 - 가.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1) 면 적 : 10,879㎡
 - 2) 규 모 : 지상2층 (건축면적 882.585㎡ 건축연면적1,071.18㎡)
5. 사업시행자
 - 가. 사업시행자 주소 : 전북 군산시 성산면 도암리 608-8번지
 - 나. 사업시행자 성명 : 학교법인 광동학원
6. 사업비 : 921,392천원
7.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 1단계 : 2009. 10. ~ 2010. 9. 30.
 - 2단계 : 2009. 10. ~ 2012. 12. 31.

8.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토지 소재지	구 분	지 번	지 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군산시 성산면 도암리	1	529-9	답	337	337	학교법인 광동학원	군산시 성산면 도암리 608-8				
	2	531	답	3,098	3,098	학교법인 광동학원	군산시 성산면 도암리 608-8				
	3	532-1	답	707	707	학교법인 광동학원	군산시 성산면 도암리 608-8				
	4	532-2	답	499	499	학교법인 광동학원	군산시 성산면 도암리 608-8				
	5	532-4	답	325	325	학교법인 광동학원	군산시 성산면 도암리 608-8				
	6	534	답	3,375	3,375	학교법인 광동학원	군산시 성산면 도암리 608-8				
	7	535	잡종지	2,549	2,427	학교법인 광동학원	군산시 성산면 도암리 608-8				
	8	633	도로	446	111	국 (건설교통부)					
계		8필지		11,336	10,879						

9. 관계도서 : 실음생략

군산시 고시 제2009-81호

고 시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 10.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335번지 외 4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 나. 명 칭 : 사회복지시설 신축공사
3. 사업의 개요
 - 가.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1) 면 적 : 8,834㎡
 - 2) 규 모 : 본관동 1개동(건축면적1,320.75㎡ 건축연면적1,255.95㎡)
4. 사업시행자
 - 가. 사업시행자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0-6번지
 - 나. 사업시행자 성명 : 사회복지법인 전주가톨릭 사회복지회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 ▷ 당초 : 2008. 9. 인가일 ~ 2009. 9. 30
 - ▷ 변경 : 2008. 9. 인가일 ~ 2009.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토지 소재지	구분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 내용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1	335	답	2,810	2,810	사회복지법인 전주가톨릭 사회복지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0-6				
	2	335-4	구거	794	794	사회복지법인 전주가톨릭 사회복지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0-6				
	3	336-1	전	1,352	1,352	사회복지법인 전주가톨릭 사회복지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0-6				
	4	337	전	1770	1770	사회복지법인 전주가톨릭 사회복지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0-6				
	5	산22	임야	2,108	2,108	사회복지법인 전주가톨릭 사회복지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0-6				
계		5필지		8,834	8,834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군산시 고시 제2009-82호

고 시

농어촌정비법 제3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주곡(뜰아름)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시행계획 승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일

군 산 시 장

1. 명 칭 : 주곡(뜰아름)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 시행계획 승인
2. 위 치 : 전북 군산시 나포면 주곡리 443-1번지 일원
3. 면 적 : 29,167㎡
4. 승인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31조 제2항
5. 승인 연월일 : 2009. 10. 12
6. 승인내역 : 아래 승인사항 내역 참조
7. 사 업 기 간 : 2007. ~ 2010.
8. 사업시행자 : 군산시장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장 위탁시행)
9. 기 타
 - 관계도서 및 승인사항은 군산시청 건설과(450 - 4371) 및 한국농어촌공사 지역개발팀(850 - 8276)에 비치합니다.

주곡(뜰아름)전원마을조성사업 시행계획승인 내역

1. 사업 개요

-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주곡리 일원
- 사업규모 : 개발면적 29,167㎡(8,823평)
- 사 업 비 : 2,770백만원(보조 1,500백만원, 자부담 1,270백만원)
- 사업기간 : 2007 ~ 2010년
- 시행기관 : 군산시(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위탁시행)

2. 사업시행 추진 경위

- 대상지 선정 : 2007. 2. 2
- 기본계획수립(마을정비구역지정) : 2008. 08. 28
- 주곡(뜰아름)지구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 2009. 06. 11
- 시행계획 승인 요청 : 2009. 9.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필지수	비고
전원마을조성	29,167	100.0		
◦ 분양 용지	18,296	62.7	30필지	
◦ 공공시설 용지	10,871	37.3		
- 주 차 장	898	3.1		
- 도 로	4,863	16.7		
- 산 책 로	1,042	3.6		
- 쉼 터	105	0.3		
- 소 공 원	337	1.2		
- 생 태 숲	767	2.6		
- 공용시설부지	881	3.0		
- 녹 지	1,418	4.9		
- 오.폐수처리장	560	1.9		

4. 주택 건축관련

○ 개 요				
대지면적 (㎡) (지구전체면적)	18,296	건축면적(㎡)	10,978	
건폐율(%)	60	연면적(㎡)	-	
용적율 산정용 연면적 (㎡)	-	용적율(%)	100	
주건축수	30	부속 건축물	동	㎡
주 용 도	주거용	주택 형태	단독주택	
총세대수	30			
복리시설	시설종류	주용도	면적(㎡)	개소
* 마을회관,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근린생활시설 등				

5. 마을하수도처리시설 관련

◦ 계획처리용량(시설용량)

구 분		처리규모	단위오수량	유입하수량	비고
신규택지	인구(인)	90	200	18,000	
	근린시설(m ²)	-	-	-	
	소계(A)	90	200	18,000	
기존마을	인구(인)	83	200	16,600	
	근린시설(m ²)	-	-	-	
	공공기관(m ²)	-	-	-	
	소계(B)	83	200	16,600	
계(C=A+B)		173		34,600	
여유수량(지하수량 등)(D)				5,400	
합 계(C+D)				40,000	

◦ 계획처리공법 및 처리수질

- 처리공법 : 분뇨 및 고농도유기오폐수 고도처리공법
- 처리수질

(단위 : mg/ℓ)

유입수질					방류수질				
BOD	COD	SS	T-N	T-P	BOD	COD	SS	T-N	T-P
155	137	175	37	7	9.0	23.9	8.6	18.2	1.9

6. 사업비수지예산서

(수 입)

(단위:천원)

구 분	기본계획	시행계획(B)				증 감	비고
	(A)	2008년까지	2009년계획	2010년이후	계	(B-A)	
합 계	1,500,000 (1,266,218)	875,000	625,000	(1,270,000)	1,500,000 (1,270,000)	(3,782)	
보 조	1,500,000	875,000	625,000		1,500,000		
-균 특	1,200,000	700,000	438,000		1,138,000	-62,000	
-시 균 비	300,000	175,000	187,000		362,000	62,000	
자 부 담	(1,266,218)			(1,270,000)	(1,270,000)	(3,782)	

(지 출)							
구 분	기본계획	시행계획(B)58				증 감	비고
	(A)	2008년까지	2009년계획	2010년이후	계	(B-A)	
합 계	1,500,000 (1,266,218)	73,622 (725,779)	826,003 (531,596)	600,375 (12,625)	1,500,000 (1,270,000)	- (3,782)	
[전원마을조성]	1,500,000 (1,266,218)	73,622 (725,779)	826,003 (531,596)	600,375 (12,625)	1,500,000 (1,270,000)	- (3,782)	
공 사 비	1,238,060 (525,432)		669,440 (508,977)	539,271 (12,625)	1,208,711 (521,602)	-29,349 (-3,830)	
[단지조성]	(1,225,432)	(725,779)	(508,977)	(12,625)	(1,247,381)	(21,949)	
순 공 사 비	(525,432)		(482,584)	(12,625)	(495,209)	-(30,223)	
- 정지토공	(123,760)		(245,458)		(245,458)	(121,698)	
- 단지내사면	(21,650)		(3,434)		(3,434)	-(18,216)	
- 마을생태숲	(70,000)		(17,813)		(17,813)	-(52,187)	
- 섬 터	(20,000)		(9,354)		(9,354)	-(10,646)	
- 소 공 원	(40,000)		(15,514)		(15,514)	-(24,586)	
- 산 책 로	(129,477)		(73,398)		(73,398)	-(56,079)	
- 마을광장	(50,000)		(23,447)		(23,447)	-(26,553)	
- 부대공사	(70,545)		(94,266)	(12,625)	(106,891)	(36,346)	
자 재 대			(26,393)		(26,393)	(26,393)	
용지매수비	(700,000)	(725,779)			(725,779)	(25,779)	
[기반시설]	1,238,060		669,440	539,271	1,208,711	-29,349	
순 공 사 비	1,238,060		489,379	489,094	978,473	-259,587	
- 단지내도로	223,920		203,778		203,778	-20,142	
- 외 광 사 면	9,200		5,698		5,698	-3,502	()는
- 상 수 도	32,500		34,026		34,026	1,526	외서
- 오 수 거	123,740		58,914		58,914	-64,826	자부담
- 오수처리장	436,200			440,969	440,969	4,769	
- 우 수 거	308,500		128,249		128,249	-180,251	
- 주 차 장	41,000		37,924	1,166	39,090	-1,910	
- 전기,통신	63,000			46,959	46,959	-16,041	
- 폐기물처리비			20,790		20,790	20,790	
자 재 대			180,961	50,177	230,238	230,238	
[관리비등]	261,940 (40,786)	73,622	156,563 (22,619)	61,104	291,289 (22,619)	29,349 (-18,167)	
- 기본설계비	35,911	35,911			35,911		
- 세부설계비	18,050 (40,786)		35,118 (22,619)		35,118 (22,619)	17,068 (-18,167)	
-사전환경성검토비	8,198	8,198			8,198		
-사전재해영향성검토		8,680			8,680	8,680	
- 공사감리비	129,696		87,246	40,168	127,414	-2,282	
- 사업관리비	35,399	10,000	17,854	7,777	35,631	232	
- 잡 지 출	34,686	10,833	16,345	7,508	34,686		
- 한전납입금				5,651	5,651	5,651	

7. 기타사항(승인조건 등)

- 본 사업의 추진에 따라 타법에 의하여 승인, 허가, 협의 등을 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 착수전에 완료토록 할 것
- 기 사전협의를 이루어 진 사항에 대하여 협의 조건 등을 준수토록 하고 특히 오폐수처리시설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사업 완료후에는 시설을 이관하여 환경부서에서 관리토록 하시기 바람
- 기반시설 설치 및 확정 측량 후 지형도면 고시로 취락지구 지정 절차 이행토록하고, 도로부지는 무상양여 취득 또는 매수토록 하여 소유권을 확보해야 함.
- 기반시설 설치 및 확정 측량 후 지형도면 고시로 취락지구 지정 절차 이행
- 지원되는 보조금은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하여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체 시군비를 부담토록 하시기 바람. 끝.

군산시 고시 제2009-83호

고 시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450-4445)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 10. .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 : 미룡동 450-7번지 오복마트주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면적 및 규모

사업명	시설명	결정조서		실시계획			비 고
		폭원	연장	폭원	연장	면적	
미룡동 오복마트주변 연계도로 개설	소로 2-657	8	109	8	109	1,692	
	소로 1-269	10	129	10	129	1,036	
	소로 2-658	8	127	8	127	822	
소 계						3,550	

3. 사업시행자

- 1)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조촌동 조촌로 8
- 2)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도시계획과장)

4.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 미룡동 오복마트주변 연계도로 개설 : 2009. 8. ~ 2010. 7.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 불임조서 참조

6.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7. 관계도서 : 게재실음 생략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소로2-657

순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m ²)	편입면적 (m ²)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내용
1	미룡동	456-3	전	104	43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8			
2	"	447-2	답	160	11	"	"			
3	"	452-2	답	15	15	"	"			
4	"	455-6	전	1	1	"	"			
5	"	455-5	전	319	97	"	"			
6	"	452-3	답	95	95	"	"			
7	"	452-5	전	786	756	"	"			
8	"	451-1	전	210	199	"	"			
9	"	450-7	전	446	443	"	"			
10	"	450-6	도	63	16	"	"			
11	"	450-3	전	20	18	"	"			
12	"	450-5	도	59	8	"	"			
합계				2,278	1,702					

소로1-269

순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m ²)	편입면적 (m ²)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내용
13	미룡동	453-3	전	373	373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8			
14	"	453-12	도	62	62	"	"			
15	"	416-21	도	107	107	군산시외3인	"			
16	"	416-15	도	301	301	군산시	"			
17	"	416-18	대	82	82	군산시외1인	"			
18	"	416-11	도	111	111	유영준	군산시 구암동 339			
합계				1,036	1,036					

소로2-658

순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m ²)	편입면적 (m ²)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내용
19	미룡동	452-9	전	78	78	고성자외2인	월명동 140-21			
20	"	417-1	전	373	10	이덕례	군산시 나운동 740-11			
21	"	453-5	답	269	269	김환기	군산시 미룡동 453-1			
22	"	416-23	답	334	334	재단법인천주 교전주교구유 지재단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78-3			
23	"	416-12	답	131	131	박종예순외3인	전주시 완산구 교동 67-1			
합계				1,185	822					

□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 조서

순 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또는 수량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내용
1	미룡동	416-21	컨테이너		27㎡	김대근	전주시 완산구 교동 67-1			
2	"	453-5	"		18㎡	김환기	군산시 미룡동 453-1			
3	"	450-7 451-1	"		150㎡	노동수	경기 화성 마도면 백공리 741-2			
4	"	451-1	감나무	R=15	1주	이인수	군산시 미룡동 450-2			
			대추나무	R=10	2주	"	"			
5	"	417-1	병나무	R=30	1주	"	"			
6	"	416-23	철조망		8m	재단법인천 주교전주교 구유지재단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78-3			
			단풍나무	R=15	1주	"	"			
			"	R=5	1주	"	"			
7	"	416-23	출입문		5m	"	"			
			웬스	EGI	3m	"	"			
8	"	416-12	천막		0.3㎡	박종예순외 3인	전주시 완산구 교동 67-1			

군산시 공고 제2009-1739호

공 고

군산시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 전문적으로 포상금을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파파라치로 인하여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신고 및 감시 활동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제도가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목적이 변질되어 감에 따라 영세업소 및 적법운영업소의 영업 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청소년 보호에 효과적인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에 신고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기간 제한이 없던 내용을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6개월전부터 군산시에 등재되어 있던 경우로 제한함(안 제6조제2항제3호)
- 나.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에 1인 신고건수 제한이 없던 내용을 1인이 월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안 제6조제2항제4호)
- 다. 사무관리규정에 의거 별지 별표 서식 정비(별표1, 별지제1·2호서식)
- 라. 띄어쓰기 및 잘못된 법령 인용 수정(별표1)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11월 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30 군산시 시청로 8번지(조촌동 888) 군산시청 문화체육과
(전화 : 450-4256,4257 FAX : 450-639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문화체육과(450-4256,42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을 “군산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청소년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을 “「청소년보호법」”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군산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 1명이 월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제7조제1항 중 “지급액은”을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로 한다.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포상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제7조 관련)

위 반 행 위	지 급 액
법 제26조의2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26조의2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接客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26조의2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20만원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제조업자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법 제26조의2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 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10만원
법 제26조의2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26조의2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26조의2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26조의2 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26조의2 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금전 기타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 또는 신체를 이용한 유사성교를 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4호가목(6)의 환각물질 또는 (7)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 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기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5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 접수대장

[illegible]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 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거래은행		계좌번호	
신고사항	신고일	년 월 일 시 분		
	신고기관			
	피신고인	성명 또는 업소명		
		주소 또는 위치		
	신고내용			

이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타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1. 주민등록초본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신·구조문대비표

현	개
<u>군산시 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 지급규칙</u> 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청소년보호법</u>(이하 <u>법</u> 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u>청소년</u> 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2. <u>청소년유해환경</u> 이라 함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 2(생략)	<u>군산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u> 제1조(목적) ----- 「<u>청소년보호법</u>」-----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u>청소년</u>”이란 「<u>청소년보호법</u>」(이하 “<u>법</u>”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u>청소년유해환경</u>”이란 법에 따른 <u>청소년유해매체물</u>, <u>청소년유해약물</u>, <u>청소년유해업소</u>, <u>청소년폭력</u> 및 <u>학대</u> 등 <u>청소년</u>에게 <u>신체적·정신적인</u>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u>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u> 등을 말한다.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현행과 같음) ② ----- <u>각 호의 어느 하나에</u> ----- 1 ~ 2(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제7조(지급) ①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②(생략)	3. <u>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군산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u> 4. <u>1인이 월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u> 제7조(지급) ① ----- ----- ---, <u>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u> --. ②(현행과 같음)
---	---

군산시 공고 제 2009-1751호

공 고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시행규칙안 제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군산시 지역에 대한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한 농·축·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소비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급식 지원기준(안 제3조)

- 셋째자녀 우선 지원 : 초(병설·단설유치원 포함)·중·고 순

나. 학교급식 지원신청 및 절차(안 제4조, 제5조)

- 지원대상자 → 군산교육청·전라북도교육감 → 군산시장

다. 위원회의 운영(안 제7조~11조) : 年 1회이상 정기회의 개최

라. 정산 및 지도감독(안 제12조~제13조)

3. 참고사항

이 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11월 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인재양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573-150 군산시 시청로 8(조촌동 888)

군산시청 인재양성과(전화 : 450-4216, FAX : 450-4278, 전자우편 :
ppoou@gunsan.go.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인재양성과 인재양성담당 (전화 450-421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지원대상자"란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각 호의 학교 및 유치원 중 당해연도 군산시 학교급식 지원계획에 의하여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학교 및 유치원을 말한다.
- ② "식재료공급자"란 지원대상자에게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 기관·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 ① 지원대상자의 우수 식재료 구입에 소요되는 식품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며, 조례 제4조에 따라 셋째자녀 이상 대상자의 식품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단, 예산의 범위안에서 초등학교(병설·단설 유치원을 포함한다)·중학교·고등학교 순으로 순차적으로 지원(특수학교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4조(지원신청)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년도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매년 7월말까지 유치원·초·중학교의 장은 군산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에게,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전라북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받은 교육장 및 교육감은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8월말까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필요시 신청시기·신청절차 등에 대하여 게시 또는 도내일간지 및 인터넷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교육장 및 교육감이 제출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확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지원계획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교육장과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교육장과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지원계획을 통보받은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지원계획을 통보한 기관의 장에게, 교육장과 교육감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교육장과 교육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며, 지원대상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예산회계 관련 규정 등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구입·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식재료공급자의 의무) 식재료공급자는 조례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우수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내용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학교급식 실태·지원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참석시킬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임시안건에 대하여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의 추진 등 제반업무를 처리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정산) ① 지원대상자는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 정산서를 교육장·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 및 교육감은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 및 교육장·교육감은 정산내용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지원대상자는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자는 정산결과 집행잔액을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교육장 및 교육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교육장·교육감은 그 잔액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① 시장 및 교육장·교육감은 제6조에 의하여 지원금의 지원목적 사용여부 확인 및 지원금의 집행상황 등을 감사하기 위하여 식재료공급자와 지원대상자에게 관계장부 열람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 및 교육장·교육감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확인 및 감사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지원대상자는 제2항에 의하여 명을 받은 공무원의 확인 및 감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시장 및 교육장·교육감은 확인 및 감사결과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속하게 시정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신청서(제4조제1항 관련)

신청 기관	기 관 명 (학교명)				대표자	
	소 재 지					
	연 락 처	☎ : fax :				
급식시설현황		위 치				규 모
						m ²
총 학생(아동)수		명	급식 대상 학생(아동)수		명	
신청현황		식품비 사용계획(천원)				지원신청금액(천원)
		계	농산어촌	저소득	셋째자녀	
식 품 비 산출기초 (예 시)		<농산어촌> - 유치원 = 〇〇〇명 × 〇〇〇원 × 180일 × 지원비율(%) = 원 - 초등학교 = 〇〇〇명 × 〇〇〇원 × 180일 × 지원비율(%) = 원 - 중학교 = 〇〇〇명 × 〇〇〇원 × 180일 × 지원비율(%) = 원 - 고등학교 = 〇〇〇명 × 〇〇〇원 × 180일 × 지원비율(%) = 원 <저 소 득> - <셋째자녀> -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제6조 및 동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교·유치원장(서명 또는 인)			
군산교육장, 전라북도교육감 귀하						
구비서류	1. 전년도 정산서 1부					
공지사항	학교장·유치원장 → 교육장·교육감에게 제출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신청 내역(제4조제2항 관련)

(단위 : 천원)

[illegible]

※ 교육장 · 교육감 → 시장에게 제출

(단위 : 천원)

[illegible]

– 36 –

[별지 제4호서식]

보조금 교부신청서(제5조제3항 관련)

1. 사 업 명 :

2. 사업내용 :

-

-

3. 사업기간 :

4. 교부요청금액 및 내역

(단위 : 천원)

학교명	학생수(명)		계				1/4분기 (3. 1~3.31)				2/4분기 (4. 1~6.30)				3/4분기 (7. 1~9.30)				4/4분기 (10. 1~12.31)			
	총학 생수	급식 대상자	계	농산 어촌	저 소득	셋째 자녀	계	농산 어촌	저 소득	셋째 자녀	계	농산 어촌	저 소득	셋째 자녀	계	농산 어촌	저 소득	셋째 자녀	계	농산 어촌	저 소득	셋째 자녀

5. 송금계좌번호 은 행 명 : ○○은행

계좌번호 :

예 금 주 :

「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학교장, 유치원장 (인)

군산교육장 · 전라북도교육감 귀하

[별지 제5호서식]

보조금 교부신청서(제5조제3항 관련)

1. 사 업 명 :

2. 사업내용 :

-

-

3. 사업기간 :

4. 교부요청금액 및 내역

(단위 : 천원)

기관별 기 관 별	학교 수 (개소)	학생수(명)		계				1/4분기 (3. 1~3.31)				2/4분기 (4. 1~6.30)				3/4분기 (7. 1~9.30)				4/4분기 (10. 1~12.31)			
		총학 생수	급식 대상자	계	농산 어촌	저 소득	셋째 자녀	계	농산 어촌	저 소득	셋째 자녀	계	농산 어촌	저 소득	셋째 자녀	계	농산 어촌	저 소득	셋째 자녀	계	농산 어촌	저 소득	셋째 자녀
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5. 학교별 교부신청금액 : 불임

6. 송금계좌번호 은 행 명 : ○○은행

계좌번호 :

예 금 주 :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군산교육장, 전라북도교육감 (인)

군 산 시 장 귀하

식재료 공급사실 확인서(제12조제1항 관련)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군산시 공고 제2009-1778호

공 고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의 가교 역할을 하는 통이장의 임명 및 임기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보다 더 많은 시민들에게 통이장 역임 기회를 부여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능력있는 통이장에게 계속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근거 법령 조항 수정(안 제1조)

- ▶ 제1조의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 제6항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2항, 제5항(2009.4.1 개정)

나. 관할구역안에 1년 이상 거주기간 예외 규정 신설(안 제4조)

- ▶ 신설된 통리의 경우에는 예외 인정

다. 25세이상 70세 이하 나이제한 예외 규정 신설(안 제4조)

- ▶ 부득이한 경우 70세를 초과한자도 임명 가능

라. 임기 2년, 1회 연임 제한 규정 변경(안 제7조)

- ▶ 임기 2년, 1회 연임 ⇒ 임기 2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계속 연임 가능(재임한 통이장도 공개모집 신청 가능)

마. 임기 2년, 1회 연임 제한 규정 변경에 따라 배치되는 조항 삭제

- ▶ 제7조 제1항 단서 조항 삭제(다만, 공개모집 신청자가 없을 경우, 읍면동장이 현 통이장에 대하여 재위촉 하고자 할 때에는 연임 가능)
- ▶ 제7조 제3항 “임기만료로 퇴직한 자” 1년 이내 재임명 불가 내용 삭제
- ▶ 제7조 제3항 단서 조항 삭제(다만, 임기만료로 퇴직한 자중 제7조제1항의 단서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함)

바. 반장제도 폐지시 미정비된 제12조제2항 “반장” 단어 삭제(안 제12조)

사.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의거 용어 수정

- ▶ 제16조 중 각호의 1에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아.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통이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 ▶ 법적 안정성 및 혼란 최소화 위해 필요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총무과(전화450-4238, 팩스450-4345)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조제4항, 제6항” 을 “제4조의2 제2항, 제5항” 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주민중에서” 를 “주민(신설된 통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중에서” 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70세를 초과한자도 임명 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통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4조의 절차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제3항 중 “해임·자진사퇴 또는 임기만료” 를 “해임·자진사퇴” 로 하고, 단서를 삭제 한다.

제12조제2항중 “통이·반장” 을 “통이장” 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통이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읍·면·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제4조의2 제2항, 제5항----- ----- -----.
제4조(통·이장의 임명) ①통·이장은 관할구역 안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중에서 통(리)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애향심과 책임감이 투철하고 봉사정신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25세이상 70세이하인 자중에서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해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 단서신설 >	제4조(통·이장의 임명) ①----- -----주민(신설된 통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중에서----- ----- ----- -----단, 부득이한 경우 70세를 초과한자도 임명 할 수 있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통·이장의 임기) ①통·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에 의한 공개모집 신청자가 없을 경우, 읍면동장이 현 통·이장에 대하여 재위촉 하고자 할 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통·이장의 임기)통·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4조의 절차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통·이장중 임기중에 해임·자진사퇴 또는 임기만료로 퇴직한 자는 1년 이내 재임명 할 수 없다. 다만 임기만료로 퇴직한 자중 제7조제1항의 단서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해임·자진사퇴----- -----< 단서삭제>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12조(비밀유지) ① (생략) ② <u>통·이·반장은</u>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비밀유지) ① (현행과 같음) ② <u>통·이장은</u> ----- ----- -----.
제16조(통·이장의 교체) 통·이장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1. ~ 7. (생략)	제16조(통·이장의 교체)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1. ~ 7. (생략)

군산시 공고 제2009-1780호

공 고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5일

군 산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시립예술단 단원의 위촉연령 제한을 없앴으로써 실력이 우수한 인재들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시립예술단의 공연수준을 높여 지역문화 예술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며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우리시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명 띄어쓰기에 의해 조례명 개정
(현행)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나. 단원의 위촉 연령 삭제 (안 제5조)
- 다. 단원의 정년 조항을 조로 변경 (안 제5조의2)
- 라.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미비한 문구 및 띄어쓰기 정비
 - 1) 인 → 명
 - 2) 각호의 1에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11월 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30 군산시 시청로 8번지(조촌동 888) 군산시청 문화체육과(전화 : 450-6125, FAX : 450-639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문화체육과(450-61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군산시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을 “군산시 시립예술단”으로 한다.

제2조 중 “예술단”을 “군산시 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구성) 예술단은 단장 및 각 단으로 구성하여 단장은 부시장 이 되고 각 단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향악단은 지휘자, 부지휘자, 악장, 단무장 각 1명과 수석 13명, 총무 1명, 악보, 기획, 악기 각 1명 및 상임단원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2. 합창단은 지휘자, 트레이너, 단무장 각 1명과 반주자 2명, 기획, 총무, 악보 각 1명, 수석 4명 및 상임단원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제1항 중 “시장”을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단원의 위촉) 상임단원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개전형이나 음악계의 권위기관 또는 학계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단원의 정년) 단원의 정년은 교향악단 만 57세, 합창단 만 50세(사무직은 만 57세)로 하고 정기평정시 성적이 탁월(평균 90점 이상)한 자는 1년 단위로 재위촉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10인”을 “1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2인”을 “2명”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운영 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년”을 “연”으로 한다.

제15조제2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별지 제1호서식 유료입장권 발행매수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별지 제2호서식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입장권 판매를 위탁하여 입장권 판매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 중 “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u> 제1조(목적)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지방문화 창달을 위하여 <u>군산시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u>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술단) 예술단에 교향악단, 합창단을 둔다. 제3조(구성) 예술단은 단장 및 각 단으로 구성하여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각 단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향악단은 지휘자, 부지휘자, 악장, 단무장 각 1인과 수석 13인, 총무 1인, 악보, 기획, 악기 각 1인 및 상임단원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2. 합창단은 지휘자, 트레이너, 단무장 각 1인과 반주자 2인, 기획, 총무, 악보 각 1인, 수석 및 상임단원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u>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u> 제1조(목적) ----- ----- <u>군산시 시립예술단</u>----- ----- -----. 제2조(예술단) <u>군산시 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u>-----. 제3조(구성) 예술단은 단장 및 각 단으로 구성하여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각 단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향악단은 지휘자, 부지휘자, 악장, 단무장 각 1명과 수석 13명, 총무 1명, 악보, 기획, 악기 각 1명 및 상임단원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2. 합창단은 지휘자, 트레이너, 단무장 각 1명과 반주자 2명, 기획, 총무, 악보 각 1명, 수석 4명 및 상임단원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현행	개정안
제4조(직무) ①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지휘 감독하여 각단을 총괄한다. ② ~ ③ (생략)	제4조(직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단원의 위촉) ①상임단원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개전형이나 음악계의 권위기관 또는 학계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② <삭제> ③단원의 위촉 연령은 만 35세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정년은 교향악단 만 57세, 합창단 만 50세(사무직은 만 57세)로 하고 정기평정시 성적이 탁월(평균 90점 이상)한 자는 1년 단위로 재위촉할 수 있다. <신설>	제5조(단원의 위촉) 상임단원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개전형이나 음악계의 권위기관 또는 학계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의2(단원의 정년) 단원의 정년은 교향악단 만 57세, 합창단 만 50세(사무직은 만 57세)로 하고 정기평정시 성적이 탁월(평균 90점 이상)한 자는 1년 단위로 재위촉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제11조(운영위원회) ① (생략)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u>1인</u>을 포함 <u>10인</u> 이내로 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은 문화체육과장과 교향악단·합창단지휘자와 예총지부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시의회 의원 <u>2인</u>과 시장이 위촉하는 해당분야 전문가로 한다. 단, <u>운영위원회</u>의 위원장은 회의시 위원과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경우 관계위원의 회의참석을 제척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1조(운영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u>1명</u>----- -- <u>10명</u> ----- -----. ③----- ----- ----- ----- ----- -- <u>2명</u>----- ----- 단, <u>운영위원회</u>----- -----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략)	제12조(운영위원회 심의사항) --- ----- <u>각 호의 어느 하나에</u>----- -----. 1. ~ 4. (생략)
제14조(공연) ① (생략) ②정기공연은 <u>년</u> 2회 이상으로 하고, 임시공연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가진다.	제14조(공연) ① (현행과 같음) ②----- <u>연</u> ----- ----- -----.

현행	개정안
제15조(입장료 징수) ① (생략) ② 유료입장권(별지 제1호서식) 발행매수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무료초대권(별지 제2호서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입장권 판매를 위탁할 경우에는 입장권 판매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입장료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별지 제1호서식 유료입장권 발행매수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별지 제2호서식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입장권 판매를 위탁하여 입장권 판매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실비보상) ① (생략) ②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6조(실비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운영위원회----- ----- -----. ③ (현행과 같음)

군산시 공고 제2009-1781호

공 고

「군산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폐지함에 있어 군산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09년 10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 지 이 유

- 환경부에서 제정한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지침」이 폐지(2008.05.14)됨에 따라 「군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또한 법적 근거가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 동조례 폐지

3. 의 건 제 출

- 이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20일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 산시장 (참조 : 청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8번
군산시청 청소과 [전화(063)450-4330 팩스(063)452-8166]
-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방문·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주민생활지원국 청소과 재활용담당 황병일 [전화(063)450-4337] , 담당자 지희명 [전화(063)450-433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군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공고 제2009-1782호

공 고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되어 행정안전부로부터 송부됨에 따라 이에 맞게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면 대상이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실효성이 없는 감면을 폐지함

-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등에 대한 감면
- 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 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을 「지방세법」 이관 예정에 따라 폐지함
-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서 '자활용사촌'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감면조례에 반영함
- 라. '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변경하여 명확화 함
-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마. 「지방세법」 제112제2항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에 대한 감면배제 규정을 보칙으로 이관함
-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 바.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중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등 실효성이 미미한 감면을 폐지함
- 사.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법」 제266제3항에 따른 위임 사항만 감면조례로 규정하도록 정비함
- 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 감면은 「지방세법」 감면과 중복되어 삭제함
- 자. 「지방세법」 개정으로 과세표준이 6천만원 이하인 미분양주택의 경우 일반주택보다 재산세가 과다 부과됨에 따라 미분양주택의 재산세 감면 세율을 개정함

- 차.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을 분리하여 신설 규정함
- 카.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구분이 변경된 자동차 중 2009년말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폐지하고 규정을 정비함
- 타. 지역 발전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함
- 파. 감면신청서식을 조례의 서식과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서식이 일치하므로 조례로 따로 정하지 않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의 서식을 사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가. 이 감면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11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8번(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세무과(전화 063-450-4255, 팩스 063-452-8162)

다.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 담당자 김현 (전화 063-450-425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군산시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와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까지의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4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7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장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8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과 미술관
3.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4. 「과학관육성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제9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0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와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제1호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전라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

② 「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1조(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제4장 농어촌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12조(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따라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와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와 그 가족이 그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으로서 취락지구

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임대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임대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4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에 따른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에 따른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해당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같은 법 제28조의5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장 지역발전 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16조(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서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운전대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의 4분의 1 이내인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제17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 건축물·주택(그 해당 부분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18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안의 부동산(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9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전북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 까지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1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설립된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2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추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일 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제23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제24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대체입주 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 하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해당 농공단지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옥구농공단지
2. 서수농공단지
3. 성산농공단지

제25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

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4조의3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제26조(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7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28조(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 해제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3. 부동산 취득 후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

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에서 정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잔존 감면기간동안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장 보칙

제29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1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를 준용한다.

제33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를 적용한다.

제34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을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